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55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.

발 의 자: 김주영·홍성국·진성준

이광재・신정훈・이수진비

김승원 • 이규민 • 윤준병

박영순 · 황운하 · 서영석

유정주 • 이용우 • 김회재

임호선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·제출한 분기별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예산을 배정받은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관이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시행령에는 예산의 재배정 업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국재정정보원(dBrain운영본부 예산정보부)이 법적 근거 없이 각 중앙관서(별도의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방부, 방위사업청은 제외)의 분기별(1분기는 각 중앙관서가 직접 재배정 수행) 예산 재배정 업무를 2008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총

37회 수행하여 대신 처리한 관례가 문제가 되고 있음. 물론, 각 중앙 관서가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대로 dBrain의 배정 버튼만 대신 눌러주는 단순한 방식이고 담당자 부재에 따른 미배정 처리로 인한 집행지연 방지를 위한 관행이지만 법적 근거 없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예산의 재배정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움.

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, 각 중앙관서의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 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예산의 재배정)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.

-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 항에 따라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.
-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과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「한국재정정보원법」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3조의2(예산의 재배정) ① 각
	중앙관서의 장은 「국고금 관
	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
	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
	를 하게 할 때에는 제43조에
	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
	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
	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
	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
	<u>한다.</u>
	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
	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
	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세출
	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
	있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
	배정하여야 한다.
	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
	및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
	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「국고
	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
	른 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
	게 통지하여야 한다.
	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

및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「한국재정정보원법」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